

국제 환경 변화에 따른 HACCP  
제도의 적용

한국식품위생연구원

정명섭

# 국제 환경 변화에 따른 HACCP제도의 적용

한국식품위생연구원

정 명 섭

## 1. 서론

인간이 매일의 생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서 식품이 필수 요소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人)에게 좋은(양·良) 것을 식(食)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중요한 식품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안전성 다시 말해서 식품 위생이다.

최근의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식품의 오염 가능성 증가, 방사선 조사 등 새로운 가공 기술의 사용에 따른 유해 물질 생성에 대한 의구심 증가, 분석 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유해 물질의 발견, 수입 식품의 급증 등에 따라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급증하고 있고, 국민의 의식 수준도 빠른 속도로 향상되어 좀 더 안전한 식품에 대한 요구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우리 나라에서도 식품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을 상기해 보아도 콩나물 농약 사건, 산분해 간장 위해요인 사건, 불량 돼지기름 사건 등 쉽게 열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그리고 우리 소비자와 밀접한 관계에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 할 필요도 없이 좀 더 안전한 식품을 원하는 것은 인간 본연의 권리이며 욕구이고, 이와 같은 욕구는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것 같다. 최근에 아프리카 난민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곡물중 존재할 수 있는 잔류 농약에 대해서도 현지에서 강력하게 문제가 제기 되고 있을 정도로 이제 식품의 안전성은 빈부나 국가 발전 정도에 관계없이 전세계인의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식품위생에 관심 커지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식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여러 국제기구나 단체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는 식품위생을 “재배, 생산, 또는 제조

단계로부터 사람이 섭취할 때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모든 식품의 안전성(Safety), 완전성(Wholesomeness) 및 건전성(Soundness)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정의하고 있어, 이와 같은 정의는 우리 나라의 식품위생 행정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1995년 1월에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출범과 함께 식품과 관련된 다양한 국제기구 및 단체의 활동이 활발해 지고 있는데 우리 나라 식품산업에 큰 영향을 주는 국제기구로는 WTO와 아·태경제협력기구(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가 있으며, WTO에서 국제식품기준규격으로 그 중요도가 급부상하고 있는 국제식품기준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ODEX)가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우리 나라 식육 산업체에서의 식품위생관리를 위한 HACCP제도를 왜 수행하여야 하는가를 WTO, APEC 및 CODEX의 관련 활동 사항과 함께 논하고자 한다.

## 2. 국제식품기준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 1. CODEX의 정의 및 성격

우리가 통상 “CODEX”라고 부르는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는 1962년에 설립된 정부간(Intergovernmental) 모임체로써 현재 회원국 수는 156개국이며 우리 나라는 1971년에 가입하였고 북한은 1981년에 가입하였다. Codex Alimentarius는 라틴어로서, Codex는 법령(code), Alimentarius는 식품(food)을 말하며, 따라서 Food Code(식품법)라는 뜻이 된다. 즉,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식품에 대한 기준 규격을 포함하는 식품법전이라 할 수 있다.

CODEX는 강제적인 성격이 아니라 각국에서 이를 받아들여 (수락;Accept) 식품의 관리상 일종의 지침으로 적용할 것을 권장 (Recommend)하고 있다. 즉, 권장 성격의 기준 규격이다. 참고로 우리 나라는 주로 CODEX의 기준규격중에 잔류농약에 관한 규격을 받아들여 식품공전 식품중 잔류농약기준설정에 참고를 하고 있다.

### 2. CODEX설립 목적

CODEX의 설립 목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세계에 통용될 수 있는 식품관련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1) 식품으로 인한 인간의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여 세계인들이 섭취하는 식품의 우수한 품질, 안전성, 그리고 영양분을 보장하고 2) 국가간 식품의 원활한 교역을 도모하는데 있다.

### 3. CODEX의 설립 배경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1961년 제11차 “FAO 컨퍼런스”와 제29차 “WHO 집행이사회” 및 “FAO/WHO 합동식품규격에 대한 컨퍼런스”의 권고에 따라 1962년에 설립된 “FAO/WHO 합동식품규격 사업단(Joint FAO/WHO Food Standards Programme)”의 사업으로서 운영되고 있다.

(필자주: 따라서 FAO/WHO로 부르는 것은 옳지 않으며,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또는 영문약자로 CAC), 또는 CODEX로 불려야 할 것이다.

#### 4. CODEX의 기본기능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은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을 망라하여 공히 통용될 수 있는 식품별 기준규격을 설정하고, 식품첨가물의 사용대상이나 사용량에 대한 규격설정, 오염물질(잔류농약, 잔류수의약품, 중금속, 기타 오염물질)에 대한 규격, 식품표시등 식품의 안전성과 원활한 통상을 위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 5.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조직

1962년 FAO/WHO에 의해 CODEX가 설립된 이래 CODEX총회는 이태리 로마나 스위스 제네바에서 2년마다 한번씩 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97년의 총회는 22차 총회로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하기로 되어 있다(97. 6. 23 ~28). CODEX임원들은 FAO/WHO로부터 지원을 받고 사무국장은 로마에 있는 FAO의 Food Policy and Nutrition Division에 상주하게 되어 있다.

CODEX의 의사 결정 기관으로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있고, 실제 규격 지침서 및 권장기준설정 업무를 담당하는 CODEX의 하부조직은 CODEX 규정 IX.1(b) (i)항에 의거한 8개의 CODEX일반과제 분과위원회(World-wide Codex General Subject Committee), 14개의 CODEX식품별 분과위원회(World-wide Codex Commodity Committee) 및 지역(유럽) Codex 분과위원회인 Codex 천연 광천수 분과위원회와 CODEX 규정 IX.1(b) (ii)항에 의거한 5개 Codex 지역조정 위원회(Coordinating Committee) 및 ECE/CODEX 합동 전문가 그룹 Codex 급속 동결식품 규격화 분과위원회, Codex 과일 주스류 규격화 분과위원회가 있다. (그림 1).

##### ○ 일반원칙분과위원회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목적과 적용범위, CODEX 규격의 성격, 각국의 CODEX 규격의 수락양식, CODEX 분과위원회 지침서 개발 등의 일반원칙 설정과 식품의 국제교역을 위한 도덕규범의 설립을 도모한다.

○ 식품위생 분과위원회

모든 식품에 적용할 수 있는 식품위생에 대한 기초 조항을 마련하고 CODEX 식품별 규격 및 실행규범등에서 위생관련 조항의 및 특정 위생문제를 고찰한다.

○ 식품 수출입 검사 및 인증제도 분과위원회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정당한 교역관행을 보장하며 식품의 국제간 교역을 원활히 하기 위한 식품 수출입 검사 및 인증제도에 대한 원리와 지침서를 개발하고 품질 보증제도의 각국간에 또는 양국간 승인을 촉진한다. 각 국가에서 요구하는 공적증명서의 양식, 문서, 언어에 대한 지침서 결정기준을 개발한다.

6. CODEX 관련 국제단체

전 세계적으로 국민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가고 있고, WTO 시대가 열린 이때 CODEX와 같은 국제식품 규격의 필요성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인 식품의 무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식품의 안전성과 무역의 공정성을 이루기 위한 국제연합 WHO/FAO의 노력에 의해 선진국, 중진국, 또는 후진국까지 수용할 수 있는 국제식품기준 규격, 즉 CODEX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러한 기준 규격을 설정하기 위해 돕고 있는 여러 국제협력기구들이 있는데 이러한 국제기구들은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Consumers' Union (IOCU),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Association of Official Analytical Chemists (AOAC), International Dairy Federation(IDF)와 International Life Sciences Institute(ILSI)등이 있다.

### 3.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7년여의 오랜 시련 끝에 UR협정이 타결되고, 바로 94년 4월 15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에서는 세계무역기구인 WTO의 설립 협정문에 정식 서명하였다. 그 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을 WTO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가 착실히 진행되어 95년 1월 1일 부터 WTO가 발족되어 국제적인 경제 질서는 국경없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WTO시대가 도래한 후 통상에 있어서의 획기적인 변화는 전세계 통상국들이 통상마찰 요인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역시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산품의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아 이러한 전세계적인 변화에 민감해 지고 또한 WTO협정문을 수용하여 국제적 입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정부, 학계 및 산업계의 지대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WTO는 세계인의 생활수준의 향상, 완전고용의 달성, 높은 수준의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지속적인 양적증가, 생산증대 및 상품과 서비스 무역의 증대를 목표로 되어 있다.

WTO협정문의 구성은 전문 16조와 부속서 1의 상품교역에 대한 12개의 개별협정문, 부속서 1B의 서비스 무역, 그리고 부속서 1C에 지적재산권, 부속서 2의 분쟁해결 규칙, 부속서 3은 무역정책 검토기구 및 부속서 4 복수간 무역협정으로 되어 있다. 부속서 3까지는 WTO가입에 의하여 자동 가입되어 권한과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며, 부속서 4는 4개의 개별협정문으로 되어 있어 이중 하나만 우리나라에서 가입한 실정이다.

상품교역에 대한 12개의 개별협정문중 식품의 교역과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협정)이 있으며 이와 더불어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협정), 투자규제 협정, 농업협정 등이 있을 수 있다.

SPS협정문은 수입되는 식품의 검사 및 동식물의 검역과 관련된 사항을 원칙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회원국은 각국의 위생보호를 위한 적정할 수준을 결정할 때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되어 있으며, 식품의 교역에 대한 문제발생시 국제 기준, 지침 및 권고로서 CODEX가 그 지위를 인정받았다.

SPS협정의 원활한 적용을 위한 각종 지침서의 작성, 용어의 해석 등의 작업과 SPS협정의 적용과 관련되어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SPS위원회가 있으며, 그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SPS위원회는 1995년 이후 매년 3회 씩 열려 올해 3월 제 7차 회의를 하였으며, 논의중인 주요 내용으로는 8개의 국제기구 (IPPC, CODEX, OIE, WHO, FAO, ISO, ITC, UNCTAD)에 업서버 지위를 부여하였으며, 기타 6개의 국제기구가 업서버의 지위를 신청 또는 논의 중에 있다.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은 금번 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협정의 이행에 대하여 각국은 자국의 수출에 방해가 되는 국가의 조치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투명성 규정에 대한 운영 방안과 그 내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국제규격 사용에 관한 모니터링제도 개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기타 위해분석 등에 대한 일관성과 기술지원 및 협력 등의 여러 가지 논의를 하였다.

SPS협정문중 식품과 관련된 핵심사항은 제3조 조화(Harmonization), 제3조 3항의 과학적 정당성, 제4조 동등성(Equivalence), 제7조 투명성(Transparency)등이 있다. SPS 조치는 “식품, 음료, 사료내의 식품첨가물, 오염물질, 독소, 병인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회원국의 국민이나 동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된다”고 부속서 1의 정의 (b)에 명시되어 있다. (Any measure applied to protect human or animal life or health within the territory of the Member from risks arising from additives, contaminants, toxins or disease-causing organisms in foods, beverages or feedstuffs.) 따라서, 국제적인 교역에 있어서 식품과 관련된 식품첨가물, 오염물질, 독소, 병인균에 관한 모든 문제들은 SPS협정문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 4. 아·태경제협력기구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태경제협력기구는 1989년 11월 발족하여 현재 아시아 태평양국가중 18개국 (한국, 호주, 부르나이,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일본, 중국, 태국, 대만, 필리핀, 대만, 홍콩, 멕시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칠레, 파푸아뉴기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성은 경제지도자회의, 각료회의, 고위실무자 회의, 경제위원회, 무역투자위원회, 예산행정위원회, APEC사무국 및 실무작업반이 있고 비정기적으로 회의로 장관회의 및 저명인사그룹이 있다.

APEC은 1994년 보고르 선언과 더불어 그 활동이 보다 활성화되었으며, 선진국의 경우 2010년 후진국의 경우 2020년까지 무역의 자유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오오사카활동지침 (Osaka Action Agenda; OAA, 1995년)에 의하여 그 구체적인 행동강령이 정하여졌으며, 1996년에는 OAA를 확인하는 마닐라 선언을 하였다.

식품산업과 관련된 여러 위원회로는 무역투자위원회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의 부속 소위원회의 표준 및 적합성 소위원회 (Sub-Committee on Standards and Conformance; SCSC)와 기타의 어업 및 수산물작업반 (Fish and Fishery Products Working Group), 식품작업단 (Task Force on Food) 및 농산물 수출입관련 회의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WTO와 같이 각 위원회가 협정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상위 위원회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한시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모든 소위원회, 전문가회의 등 모든 회의를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참여하고 있는 SCSC는 최초 1997년도에 산회하기로 하고 구성되었으나 그 목적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지속될 전망이다. OAA에 의한 SCSC의 목적은 ① 표준과 적합성 판정의 투명성 확보, ② 자율 및 강제 규격의 국제기준과의 일치, ③ 자율 및 강제 분야에서의 적합성 상호인정 및 ④ 기술하부구조의 개발이며, 이를 위하여 식품을 포함한 모든 이차산업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이중 식품산업의 경우 1996년 식품표시제도에 대한 국제 규격과의 일치조사 사업이 있었으며, 식품 적합성 상호인정일반협정문 (APEC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on the Conformity Assessment of Foods and Food Products; APEC Food MRA)을 완성하였으며, 98년도 작업으로 식품표시제도의 실태 조사 및 일치방안 마련에 대한 중국의 작업 계획을 심사하고 있다. 기타 식품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모든 공산물에 적용되기 때문에 식품에서도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자발적 분야의 국제규격과 일치화 지침이 1996년 완료되었으며 강제 규격의 일치화 지침도 개발 중에 있으며, 공식적으로 EU와의 협상을 하기 위한 방법을 설정하였다. 이와 함께 SCSC에서는 각 회원국이 강제적으로 하여야 할 공동이행계획 (Collective Action Plan; CAP)과 자발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개별이행계획 (Individual Action Plan; IAP)을 제출한 바 이에 따라 수행하고 있다.

APEC Food MRA는 개별식품에 대한 상호인정협정문을 작성하기 위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으로 식품전문가 회의를 거쳐 1996년 4차 회의 (10월)에서 완성되었으며, 1997년 2월초 현재 가입한 국가는 없으나 뉴질랜드, 호주 등의 국가가 참여 준비를 하고 있다. 이의 완성과 함께 작성의 지침으로 사용한 보충문서의 수정작업을 뉴질랜드와 싱가포르가 하고 있다.

SCSC의 CAP중 식품과 관련 있는 국제규격과의 일치 사업에 대한 사항으로는 2005/2010년까지 식품표시제도의 국제규격과의 일치가 있으며, 1997년까지 상호인증에 대한 협정을 하기로 되어 있다. 우리 나라가 제시한 IAP중 식품과 관련 있는 국제규격과의 일치 사업에 대한 사항은 단기과제(1997-2000년)로는 WTO에 입각하여 관련 규정의 제·개정작업시 국제규격과의 일치, 중·장기과제(2001-2010/2020)로 식품표시의 CODEX 기준과의 일치가 있으며, 상호인정에 대하여서는 APEC Food MRA의 참여가 있다.

또한 CODEX에서는 국제표준협회 (ISO), 국제유가공연맹(IDF), 국제올리브협회 (IOOC), 국제생명과학협회(ILSI), WTO, 국제소비자연맹(CI) 등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 가능한 이들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5. 각 국의 HACCP제도 도입 현황

### 1. 한국

우리 나라의 경우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국에서는 1993년부터 연구용역사업을 주어 위해발생가능성이 높은 햄·소시지제품, 어육제품, 유 및 유제품, 그리고 냉동제품에 대한 기초연구가 완료된 상태이고, 대상 식품별 세부사항은 95년에 식육제품, 96년에는 어육제품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고, 97년에는 유 및 유제품에 대한 HACCP제도 적용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연구 결과 식품위생법 제 32조의 2(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를 1995년 12월 29일 신설하여 HACCP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법조항을 보면 ①“保健福祉部長官은 食品의 原料管理, 製造·加工 및 流通의 全過程에서 危害한 物質이 汚染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過程을 中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危害要素重點管理基準”이라 한다)을 食品別로 정하여 이를 告示할 수 있다.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食品別로 危害要素重點管理基準을 정하는 때에는 당해 食品을 製造·加工하는 營業者중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營業者에 대하여 이를 준수하게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림부에서도 1995년도부터 대학교수, 국립검역소, 수의과학연구소 등에 연구용역을 주어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적 도입 현황으로는 EU 수출 수산물가공시설 등록 및 취급요령을 개정고시(1996년 4월 23일)하여 HACCP기준에 의한 위생관리 점검을 의무화하고 있다.

### 2. 일본

일본은 1994년 7월에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PL법)이 제정되어 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제조연월일 표시제도에서 품질보존의 기한 표시제도로 바뀌었다. 이러한 개정들은 식품제조자의 직접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자주적인 위생관리 체계의 정비·확충이 한층 더 필요하게 되었다. 1991년에는 식조육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식조류처리장에 대한 감시 및 검사 제도가 발족되었고, 일본 후생성 유육위생과에서는 「식조류처리장의 HACCP방식에 의한 위생관리 지침」을 편찬하여 식조류처리에 대한 자주위생관리의 지

도를 하기로 하였다. 후생성에서는 또한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라 실시하는 「식품보건에 관한 규제의 검토와 자주위생관리의 추진」에 관련하여, 1996년 5월에는 HACCP개념에 따른 「종합위생관리제조과정에 있어서의 식품 등의 승인제도」를 발족시키고 대상식품으로서는 유제품과 식육제품을 상정하여 위원회에서 검토하였다. 이 승인제도와 관련하여 일본 후생성장관은 일본에서의 HACCP제도 시행은 CODEX에서 지정한 지침서의 7가지 원칙과 12 단계의 수순에 따라 행한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농수산성은 1994년부터 「식품공장안전향상종합관리시스템개발사업」을 시작하고, 그 일환으로 「HACCP 매뉴얼」책정사업을 시작하여 94년에 냉동채소류, 95년에 조리냉동식품에 대한 매뉴얼이 공포되었다. 수산청에서는 1995년부터 수산식품의 HACCP제도에 의한 품질관리 매뉴얼사업이 시작되었고, 96년부터는 냉동어묵, 냉동생식용 가리비조개, 냉동고등어튀레에 대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 3. 미국

HACCP방식은 1960년대 미국 Pillsbury社에서 우주계획에 참여하는 우주인들을 위한 가장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 처음 사용되었다. 1973년에 제정된 「저산성 통조림식품의 GMP」에서 HACCP의 개념을 도입하여 국립과학원 (National Academy of Science), 식품의 미생물기준에 대한 국가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Committee for Microbiological Criteria for Foods) 및 CODEX에서도 높이 HACCP 방식에 대하여 높이 평가받게 되었다. 그 후 미국에서는 수산식품이나 일반가공식품에 대해 HACCP의 개념을 도입한 제조관리나 법적규제를 시행할 것을 제창하여 왔는데 1995년 12월 18일부터 수입식품을 포함한 수산제품에 대한 HACCP제도의 시행을 강제화하여 97년 12월부터 시행하게 하였다. 미국 농무성에서도 식육이나 가금육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HACCP 제도의 의무적 시행을 발표하였다.

### 4. 기타 국가 및 단체

EU에서는 수년전부터 수입식품을 포함한 수산물이나 식육제품의 HACCP

개념을 도입하였다. 캐나다도 1996년부터 식육제품 등에 대한 HACCP 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여 각 업체들에게 HACCP 매뉴얼을 작성하여 지도를 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수출되는 전 식육제품에 대한 HACCP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CODEX에서는 「HACCP 방식의 적용에 관한 지침」을 1993년 7월에 발표하여 각국의 의견을 받아 조정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 CODEX 지침이 결정이 되면 각 나라들의 HACCP 계획의 입안, 실시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CODEX 식품위생분과위원회의 의장국은 미국으로서 미국의 HACCP 방식이 CODEX의 HACCP 기준 설정에 가장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 6. 결론

식품산업 관련 분야도 “개방과 공정”이라는 WTO의 기본정신 아래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에 휩싸여 있다. 반면에 APEC, NAFTA, EU 등 인접한 국가사이에 특혜적 통상이나 경제협력관계를 형성하는 지역주의가 활거하는 독특한 국제환경에 처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발빠르게 적응하는 것도 식품산업의 발전에 일익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WTO, APEC 및 CODEX의 목적, 구성 및 현재의 활동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WTO의 SPS협정은 식품위생에 관한 국제적인 협정으로 식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CODEX를 준용하게 하여 비강제적인 CODEX 기준·규격의 지위를 향상시켰으며, APEC은 지역내 무역 자유화를 달성하면서 외적으로는 WTO 또는 CODEX 등의 국제회의의 결과를 예의 주시하면서 EU 등의 타 지역 경제 블록에 대처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식품들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HACCP제도 시행의 요구는 EU나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갈 추세이다. 이러한 범세계적인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욕구에 의해 CODEX의 식품위생 분과위원회에서는 HACCP제도 시행에 대한 세부지침을 개발하고, 수출입검사 및 인증제도분과위원회에서는 수출·입국가들간에 HACCP제도 시행을 인증하여 주는 기준을 설정하는 작업중에 있다.

결론적으로 CODEX 기준·규격은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식품의 교역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WTO의 SPS협정에 의해 적용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강제조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도 CODEX기준·규격의 설정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